



## 동산에 대하여

글 · 이상협 회장 월드전자(주)

동산(動產:movables)이란 모양이나 성질을 변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 재물을 말하며, 부동산(不動產:real estate)은 논이나 집 따위와 같이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을 말한다.

민법상 토지 및 건물 등과 같은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그 밖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그리고 증권 등에서 권리자의 이름이나 상호(商號)를 적지 않는 무기명식(無記名式)의 무기명채권은 동산으로 간주한다. 선박·자동차·항공기 등은 본래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바든다. 양자의 구별의 근거는 첫째, 사회경제상의 가치에 차이가 있는 것, 둘째,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인도와 같이 물건의 공시방법을 달리하는 것 등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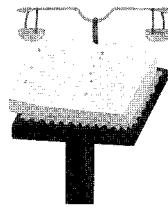
즉, 부동산은 동산에 비하여 그 가치가 크고 소재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권리관계를 등기로서 공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률상 특히, 물권법상 여러 점에서 그 취급을 달리한다. 근래에는 유가증권의 출현에 따라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고 가치의 대소에 의한 구별은 실익이 없다. 그래서 법률상으로는 이동성 즉 입법기술상-권리의 특성·변경의 효력발생요건인 인도와 등기의 여부에 따른 구별 뿐이다. 또 동산에

는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만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타물권의 설정이 인정되나 동산에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이 양자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민사집행법상으로는 강제집행의 목적물로서의 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유체물에 한하지 않고 널리 선박이나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이외의 물건 또는 재산권을 포함한다. 따라서 유체동산이라 할 때 민법상의 동산 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한다.

유체물(有體物)은 공간의 일부를 차지하는 형체가 있는 것으로, 유체자산(有體資產)이라 함은 유체물인 자산을 지칭한다. 반대로 무체물(無體物)은 법률에서, 전기·열·소리·빛 따위와 같이, 유형적(有形的)인 존재를 가지지 않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이와 관련하여 무체재산권(無體財產權)이란 무형(無形)의 재산적 이익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곧 인간의 정신적 산출물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통털어 이르는 말로, 공업소유권과 저작권 따위이다.

동산과 관련하여 동산저당(動產抵當)이 있는



데, 채무자가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그 동산 위에 물적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동산은 질권의 목적물로만 되고, 저당권은 부동산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민법상 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농업경영이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그 경영의 용구 즉 동산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담보로 하여 응자를 얻어야 할 요청이 강하므로 특별법에 의하여 특별한 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동산의 양도담보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산저당의 기능이 수행된다. 적당한 공시방법이 없는 것이 동산저당제도를 경솔하게 허용할 수 없는 원인이 되어 있다. 그렇지만 경제적 필요는 특수한 등기나 등록의 제도를 고안하기에 이르러 차차 발전하게 된 것인데, 현재 우리 나라에서도 다음 2종이 인정되고 있다.

첫째, 자동차저당이다. 자동차저당법에 의하여 등록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운수업자·중소상공업자 기타의 자동차소유자를 위하여 이것을 사용하면서 담보화하고 금융수단으로 되도록 인정하는 동산저당을 말한다.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이 그 공시방법이다.

둘째, 항공기저당이다. 항공기저당법에 의하여 항공사업에 대한 금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받은 항공기나 헬리콥터에 대하여 인정된 동산저당이다. 항공기등록원부에의 등록이 그 공시방법이다. 선박은 동산이지만 등기선박은 부동산과 같이 취급되므로 선박저당은 보통 동산저당이라고는 부르지 않는다.

동산질(動產質)이란 위에서 설명한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시계·의류·보

석류의 입질 등 질권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서민금융의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동산질의 설정에는 합의 이외에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고, 또 점유개정에 의하여 인도에 갈음할 수 없다. 이것은 특히 동산질권에 본질적인 유치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점유침탈의 경우에는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나, 침탈 이외의 사유로 점유를 상실하면 질권(質權:right of pledge)을 상실하느냐에 대하여는 민법은 소유권에 기(期)한 물권적 청구권을 규정한 제213조와 제214조의 어느 것도 질권에 관하여 준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질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고 하는 견해와, 이를 입법상의 착오로 보고 질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는데, 후자가 다수설이다.

증권에 의한 상품의 입질은 증권을 질권자에게 배서 또는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증권의 인도가 상품 자체의 인도와 동일시된다. 유질계약은 금지되지만 비교적 가치가 적은 질물(質物:pawn)을 목적으로 하는 동산질권의 실행에 관해서는 경매 이외에 특히 간이한 환가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즉, 채권액에 비하여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 질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질권의 서민금융적인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당포영업법은 철저한 행정적 감독을 가하는 한편 전당포에 대하여 유질(流質:forfeited pledge)을 허용하였다.